

#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

## I. 결산현황

### 1. 세입결산

○ 해당없음.

### 2. 세출결산

○ 예 산 액 : 4억 1천 4백만원

○ 예산증감 : 0원

○ 예산현액 : 4억 1천 4백만원

○ 지 출 액 : 3억 5천 9백만원

○ 이 월 액 : 0원

○ 불 용 액 : 5천 5백만원

-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3.4%(전년도16.5%)가 발생

- 불용사유는 전액(55,685천원) 집행잔액임.

### 〈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총괄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예산과목<br>(정책/단위사업/세부사업)     | 예산현액(A)        | 지출액(B)         | 다음연도<br>이월액(C) | 불용액<br>(D=A-B-C) | 불용률<br>(%)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<b>총 예 산</b>               | 414,436        | 358,751        | -              | 55,685           | 13.4        |
| <b>사 업 예 산 계</b>           | 285,000        | 250,128        | -              | 34,872           | 12.2        |
|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             | 45,164         | 36,383         | -              | 8,781            | 19.4        |
|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              | 10,803         | 10,803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
| 옴부즈만제 운영<br>(양천구 주민참여)     | 30,000         | 30,000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
|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          | 33,500         | 26,379         | -              | 7,121            | 21.3        |
|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             | 77,600         | 66,183         | -              | 11,417           | 14.7        |
|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<br>강화 및 선진화 | 87,933         | 80,380         | -              | 7,553            | 8.6         |
| <b>일 반 예 산 계</b>           | <b>129,436</b> | <b>108,623</b> | <b>-</b>       | <b>20,813</b>    | <b>16.1</b> |
| 기 본 경 비                    | 129,436        | 108,623        | -              | 20,813           | 16.1        |



## Ⅱ. 검토 및 의견

### 1. 세출결산

#### 가. 예산 불용률 과다

-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(414,436천원) 대비 불용률(집행잔액 55,685천원)은 13.4%(전년도 16.5%)로 전년도 대비 3.1% 감소하였으나,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(2.3%)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.

#### 〈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〉

(단위:천원)

| 예산과목<br>(정책/단위사업/세부사업)    | 예산현액(A) | 지출액(B)  | 다음연도<br>이월액(C) | 불용액<br>(D=A-B-C) | 불용률<br>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총 예산                      | 414,436 | 358,751 | -              | 55,685           | 13.4       |
| 사업예산계                     | 285,000 | 250,128 | -              | 34,872           | 12.2       |
|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            | 45,164  | 36,383  | -              | 8,781            | 19.4       |
|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             | 10,803  | 10,803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
| 옴부즈만제 운영(양천구 주민참여)        | 30,000  | 30,000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
|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         | 33,500  | 26,379  | -              | 7,121            | 21.3       |
|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            | 77,600  | 66,183  | -              | 11,417           | 14.7       |
|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<br>역량강화 및 선진화 | 87,933  | 80,380  | -              | 7,553            | 8.6        |
| 일반예산계                     | 129,436 | 108,623 | -              | 20,813           | 16.1       |
| 기본경비                      | 129,436 | 108,623 | -              | 20,813           | 16.1       |

#### 1) “고충민원 적극적 조사·처리” 사업 과다 불용

- “고충민원 적극적 조사·처리” 사업은 민원조정·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, ‘시·자치구 고충민원 담당자 교육’, ‘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’, ‘민원배심법정 운영’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, 예산현액(45,164천원) 대비 불용률이 19.4%(8,781천원)이며, 이중 ‘사무관리비’의 예산현액(24,164천원) 대비 불용률은 28.8%(6,964천원)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.

## 〈“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” 사업 예산집행 내역〉

(단위:천원)

| 세부사업명            | 통계목           | 내역               | 예산현액          | 지출액           | 집행잔액         | 불용률(%)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<b>합계</b>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<b>45,164</b> | <b>36,383</b> | <b>8,781</b> | <b>19.4</b> |
| 고충민원 적극적<br>조사처리 | 사무관리비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 | 24,164        | 17,200        | 6,964        | 28.8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| 5,000         | 2,163         | 2,837        | 56.7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 | 6,064         | 1,540         | 4,524        | 74.6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     | 13,100        | 13,497        | -397         | -3.0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시책추진<br>업무추진비 | 합계               | 21,000        | 19,183        | 1,817        | 8.7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고충 민원조사활동 업무추진   | 14,000        | 15,700        | -1,700       | -1.2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민원조정·중재제도 운영     | 7,000         | 3,483         | 3,517        | 5.0         |

-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‘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’ 추진 시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고충처리하고(불용률 74.6%, 4,524천원), ‘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’ 2회 중 하반기 교육을 강사료 없이 추진(강사를 국민 권익위원회 특별민원전문관을 초빙)하였으며, 기타 ‘시책추진업무추진비’ 집행잔액(불용률 8.7%, 1,817천원)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.
- 그러나 예산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, 일부는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지출하는 등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관행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되었다고 보여 지는바, 재정의 비계획적 운용에 따른 비예측성을 수반하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### 2) “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” 관련

- “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” 사업은 서울시 감사·조사에 외부전문가, 시민 등의 참여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심의회 운영 및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, 예산현액(33,500천원) 대비 불용률은 21.3%(7,121천원)이며, 이중 ‘사무관리비’의 예산현액(17,500천원) 대비 불용률은 32%(5,601천원)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높은 수준임.

## 〈“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” 사업 예산집행 내역〉

(단위:천원)

| 세부사업명            | 통계목           | 내역               | 예산현액   | 지출액    | 집행잔액  | 불용률(%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합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33,500 | 26,379 | 7,121 | 21.3   |
| 시민감사 및<br>주민활동지원 | 사무관리비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 | 17,500 | 11,891 | 5,601 | 32.0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     | 7,500  | 8,249  | -749  | -1.0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감사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| 10,000 | 3,650  | 6,305 | 63.1   |
|                  | 시책추진<br>업무추진비 | 합계               | 16,000 | 14,481 | 1,520 | 9.5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시민·주민감사 업무수행     | 16,000 | 14,481 | 1,520 | 9.5    |

-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는 ‘감사·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’ 추진시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발생(불용률 63.1%, 6,305천원)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, 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와 상반될 뿐 아니라, 예산편성시 시민감사의 외부 전문가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인바,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필요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- 한편, 「결산서」의 성과보고서(결산서 32쪽)에서는 성과지표 ‘시민감사 옴부즈만 권익구제 만족도’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, 2017년도 감사 청구인의 만족도는 전년(73.3점) 대비 3.1점 하락한 70.2점으로 나타나고 있음.

### 〈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〉

| 성과지표(단위)                | 측정산식(방법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표대비<br>달성률 | '16년<br>달성성과 | '17년<br>달성성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고충민원 직접조사<br>처리건수(건)    | 고충민원 직접조사<br>처리건수 합산               | 목표          | 360건         | 731건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적          | 367건         | 734건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성률(%)      | 102%         | 101%         |
| 시민감사옴부즈만<br>권익구제 만족도(건) | 시민감사옴부즈만의<br>감사 및 조사에 대한<br>시민 만족도 | 목표          | 72점          | <b>73.5점</b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적          | 73.3점        | <b>70.2점</b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성률(%)      | 102%         | <b>96%</b>   |

-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<sup>1)</sup>를 보면, 감사결과 만족도 정도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강제성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**〈2017년도 감사청구인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〉** (단위 : 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2017년 | 2016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평균                     | 70.2  | 73.3  |
| 감사안내 및 감사결과 공표에 대한 만족도 | 78.3  | 79.1  |
|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     | 60.0  | 67.8  |
|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 | 71.7  | 73.0  |

※ 평균 만족도를 2016년 대비 3.1점이 하락하였음.

-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듯이 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구속력 확대와 시민·주민감사는 물론 민원배심법정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‘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 권익 보호 증진’ 정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※ 한편, 위원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<sup>2)</sup>」에서 규정한 ‘서류제출 요구권’에 따라 2017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목적으로, 결산 관련 주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바 있고, 그 중 불용률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요구(요구자료 2-8, 통계목별 불용률 20%이상 발생사업 현황과 사유)에 대하여, 본 사업에서 높은 불용률(21.3%)이 발생하였음에도, 이에 대해 ‘해당사항 없음’으로 제출(본 사업 중 사무관리비 통계목의 불용률 32%)하였는바, 이러한 부실한 자료 제출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.

1) “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민 권익구제 관련 「2017년도 시민·주민감사 청구인 만족도 조사」 결과보고” (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-1157(2018.1.22.))

2) 지방자치법 제40조(서류제출요구)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3) “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” 사업 관련

- “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”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, 용역, 물품구매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·평가하는 사업으로, 예산현액(77,600천원) 대비 불용률은 14.7%(11,417천원)이며, 이중 ‘사무관리비’의 예산현액(66,600천원) 대비 불용률은 16.6%(11,044천원)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#### 〈“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” 사업 예산집행 내역〉

(단위:천원)

| 세부사업명         | 통계목        |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산현액   | 지출액    | 집행잔액   | 불용률(%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합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7,600 | 66,183 | 11,418 | 14.7   |
|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| 사무관리비      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| 66,600 | 55,556 | 11,044 | 16.6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           | 42,000 | 40,500 | 1,500  | 6.6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공공사업 감시·평가 자료 및 회의자료 인쇄 등 | 3,600  | 0      | 3,600  | 100.0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         | 21,000 | 15,056 | 5,944  | 28.3   |
|               |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| 11,000 | 10,626 | 374    | 3.4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        | 11,000 | 10,626 | 374    | 3.4    |

- 사무관리비 중 ‘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’으로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,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, 오히려 전년 대비 현장감시활동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행액은 증가하였으며, ‘공공사업 감시·평가 자료 및 회의자료 인쇄 등’의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바, 사업 추진과정에 부절절한 예산 집행 요소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#### 〈 최근3년간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집행내역〉 (단위: 천원)

| 구분   | 예산액    | 집행액    | 집행률  | 활동 건수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
| 2017 | 42,000 | 36,600 | 87.1 | 164건  |
| 2016 | 42,000 | 25,600 | 61.0 | 171건  |
| 2015 | 24,150 | 17,000 | 70.4 | 116건  |

#### 4) 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” 사업 관련

- 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” 사업은 서울시의 ‘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’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모전 등 홍보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해외 선진국가 옴부즈만 해외시찰 등을 위한 사업으로, 예산현액 (87,933천원) 대비 불용률은 8.6%(7,553천원)이며, 이중 ‘기타보상금’의 예산현액 (2,600천원) 대비 불용률은 38.5%(1,000천원)로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.
- ‘기타보상금’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위원회 홍보 포스터 공모전 개최에 따른 수상작 시상금으로써, 2017년 3월 23일 심사를 거쳐 4월 11일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하였음.

#### 〈‘기타보상금’ 예산집행 내역〉

(단위:천원)

| 통계목   | 내역                     | 예산현액  | 지출액   | 집행잔액  | 불용률(%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기타보상금 | 홍보 포스터 디자인<br>시민공모 시상금 | 2,600 | 1,600 | 1,000 | 38.5   |

#### 〈위원회 홍보포스터 디자인 수상작〉

| 1등  | 2등  |   | 3등  |  |   |
|---|---|---|---|--|---|
|  |  |  |  |  |  |
| 작품번호 23   | 작품번호 7  | 작품번호 12/13  |   | 작품번호 5   | 작품번호 14   |

#### 〈공모전 최우수작 심사위원장 심사평〉

작품번호 23번은 소통,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. 부당한 일을 당한 시민에게 옴부즈만이 역할을 다 한다는 컨셉으로 비주얼과 카피에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. 레이아웃 또한 전체 비중을 조형감 있게 구성하여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.



○ 그러나, 포스터 공모전 최우수 수상작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7년 7월 19일 해당 수상내역을 취소하고 상장 및 상금을 환수하는 소동이 있었는데, 이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. 위원회는 이번 사건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·진단하여, 심사위원의 외부 전문가 확대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사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※ 심사위원 구성 : 내부3명, 외부4명

※ 위원회는 금년 ‘UCC 동영상 시민 공모전’을 진행(6월 공모작품 접수중)하고 있음.

### 5) ‘기본경비’ 중 국내여비 불용

○ ‘기본경비’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,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이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(46,200천원) 대비 불용률이 45.0%(20,810천원)로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〈‘기본경비’ 중 국내여비 예산집행 내역〉

(단위:천원)

| 세부사업 | 통계목  | 연도   | 예산현액   | 지출액    | 집행잔액   | 불용률 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기본경비 | 국내여비 | 2017 | 46,200 | 25,390 | 20,810 | 45.0% |
|      |      | 2016 | 46,200 | 15,310 | 30,890 | 66.9% |

※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일 : 2016. 2. 4.

○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여비는 33명(정원32명)을 기준으로 일괄편성(관내출장은 1일당 2만원·1인당 월 5회, 관외출장은 1인당 연20만원)하면서, 이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정원(7인)에 대한 국내여비를 별도 사업(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”, 4,032천원)에 중복하여 편성함으로써 당연히 ‘기본경비’ 국내여비의 불용액은 과도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검토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높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.

※ 2018년도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 국내여비 미편성하였음.

- 이렇게 타 실·국에 비하여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,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|      |     |       |    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|
| 전문위원 | 김태한 | 입법조사관 | 최석훈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|